

주 택 매 매 계 약 서

매도인 김○○(이하'갑'이라 한다)과 매수인 박○○(이하'을'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번지 상에 신축중인 건물을 아래 조건으로 매매한다.

아 래

제1조(매매대금 및 지급일)

매매대금	금 일억이천만원(120,000,000원)		
계 약 금	금 20,000,000원, 계약시 지급하였음		
중 도 금	금 40,000,000원, 20○○년 ○월 ○일		
잔 금	금 60,000,000원, 20○○년 ○월 ○일		

- 제2조(목적물 인도) 목적물을 계약당시 시공된 상태대로 계약당일에 인도한다. 다만 건축현장에 반입되어 아직 시공되지 아니한 자재 및 시공회사 소유의 공 구·기계 등은 계약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출한다.
- 제3조(공사도급관계의 정리) 본 계약체결 이전까지의 매도인과 시공회사간의 채권·채무는 매수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하고 전부 매도인이 책임 정리한다.
- 제4조(토지이용관계) 매도인은 본 건 건물을 신축중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인이 본 계약 당시 가지고 있는 토지임차권과 동일한 조건의 토지 임차권(단, 임차기간은 20〇〇. 〇. 〇일 까지)을 매수인이 가지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잔금지급일 전까지 매수인과 토지 소유자간에 맺어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.
- 제5조(행정 관련사항) 매도인은 건축주 명의변경 등 제반 행정 관련사항의 명의 변경에 협력한다.
- 제6조(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액의 예정) 본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약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가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금이천만원(20,000,000원)으로 한다.



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,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서명ㆍ날인하고 각 1통을 보관한다.

2000년 0월 0일

미	주	소					
도 인	성 또 상	된 내 에	ପ	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	ı	전 화 번 호	
미	주	소					
수 인	성 또 상	땀 기가 에	인	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	_	전 화 번 호	